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u>2세</u>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u>6세</u>) 미만인 어린이 3. ~ 8. (생 략)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u>1만원</u> 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u>12세</u> 미만인 어린이 3. ~ 8.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u>7천원</u> 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821